해외 Claim 비용 청구 관련 세금 이슈

해외 3자 법인인 A에서 구매한 자재를 고객사에 납품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닷사 에서 관련 비용을 고객사에 선 송금.

이 대금을 해외 3자법인 A 에서 닷사의 해외자회사 B로 송금 후 닷사로 송금 받고자 함.

이 때, 해외 자회사인 B에서 당사로 송금시에 당사가 계산서나 Invoice 가 아닌 Claim 청 구 형태로 발행하여 Claim 첫구서 내 금액을 전액 송금받아도 회계/세무 이슈가 없는지 82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회계/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or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1. 계약이 끝난 임차업체가 두고 가는 유리벽면 및 전동스크롴기기가 본원의 법정기부 금이나 지정기부금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
 - 2.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을 기부하는 경우
 - 가. 한 화장품 업체가 의료진 및 환자 등을 위해 화장품을 현물기부하고자 함.
 - 나. 본원은 앞서 기술한대로 시설,교육,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지원 을 위한 기부일 경우 지정기부금 처리하고있음
 - 다. 질문: 화장품을 기부받을 경우 이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1. 귀사와 임차업체간의 임대차계약에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데. 원상복 구의무가 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원상복구비 대신 사용하던 비품 등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서삼-753, 2007. 03. 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 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

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인.

2.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한 현물기부받은 경우 지정기부급이라고 판단됩니다.

회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인원 3명을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도 받으려 합니다. 이렇때 무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1. 아르바이트 계약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
- 2. 11월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두 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업 받으려 합니다. 이렇 1. 아르바이트 계약 2. 11월에는 사업소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 람에게는 사업소득(비종 즉, 종속적 고용계약을 7 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소득이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 람에게는 사업소득(비종속 계약)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종속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영세율 매출 누락

당사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분까지 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9월 29일 선적 영세율 매출 1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 10월분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 2) 가산세 대상인가요?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하면 되므로, 10월분 신고시에 반영하 는 것이 아니고 2기확정신고기간에 9월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분에 대해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www.eAnSe.com 7 $2021 \cdot 01 \cdot 20$